

발송처

대법원
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
06590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
다세대주택 A동 103호(읍내리, 한국통신사원아파트)

원고(상고인
)

임그루

 36322
2060919 - 922514 ↓
(민사과 특별1부(타))
2019-035-59363-006

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법원

2019두 593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
예정 기일 :

담당재판부 : 특별1부(타)

법원사무관 원성진

직통 전화 : 02-3480-1366

팩 스 :

e-mail :

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
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(송달과 확정내역 포함)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
(<http://www.scourt.go.kr>) '나의사건검색'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(<http://www.courtauction.go.kr>)
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
대 법 원
제 1 부
판 결

사 건 2019두593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
원고(재심원고), 상고인

임그루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에이동 103호

피고(재심피고), 피상고인

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

소송수행자 김주연, 신권식, 김동주

피고보조참가인

주식회사 케이티

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

대표이사 황창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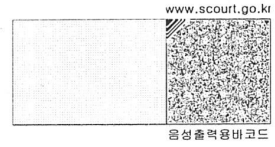
원 심 판 결

서울고등법원 2019. 10. 24. 선고 2019재누72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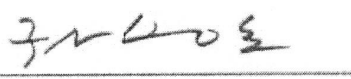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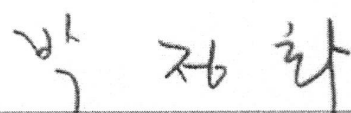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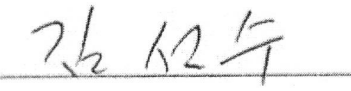

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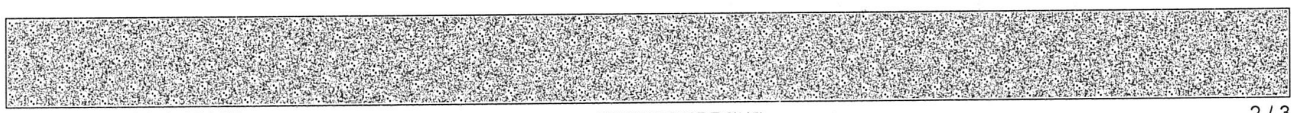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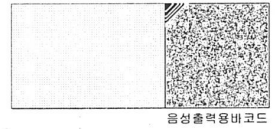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20. 2. 27.

재판장	대법관	이기택		
	대법관	권순일		
	대법관	박정화		
주 심	대법관	김선수		





정본입니다.

2020. 2. 27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원성진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